##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11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이상휘·박덕흠·박성민

구자근 • 백종헌 • 최은석

박성훈 • 권영세 • 서천호

임이자 • 배준영 • 강명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 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법정 기한 내에 종료하여 인사 공백을 막으려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무역량에 대한 질의가 아닌 행정 목적에서 벗어난 질의가 반복되어 인사청문회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법률 제 호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부득이한 사유"를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한 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			
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u>.</u>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의 목		
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	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		
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	루어져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			
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